

'96 주요 업무 계획

감 사 실

목 차

I. 일 반 현 황

1. 기구 및 정원
2. 감사 대상 기관
3. 위원회 현황
4. 주요 사무

II. 행정감사의 내실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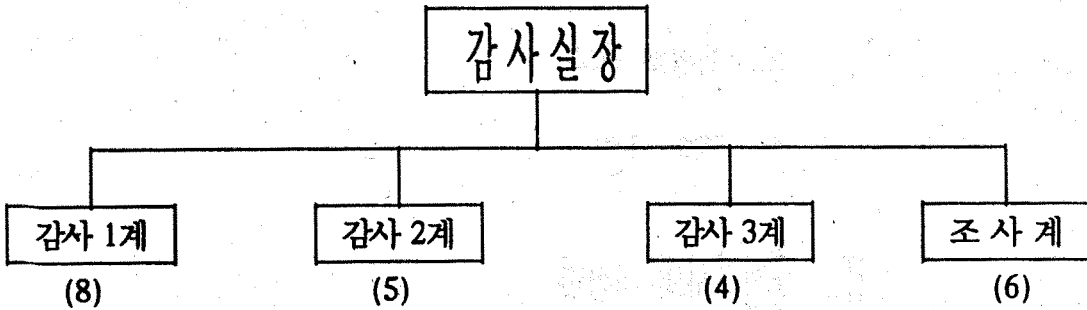
1. 정기 감사
2. 기획 감사
3. 공직 기강 점검
4.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
5. '96 자체감사기능강화대책

III. 공직자 재산등록

I. 일반 현황

1. 기구 및 정원

□ 기 구 : 1실 · 4계



□ 정. 현원

구분	총원	4급		5급		6급					7급	기능 직	일용 직
		행정	행정	토목	행정	토목	보건	건축	환경	임업	행정		
정원	24	1	3	1	7	1	1	1	1	1	3	3	1
현원	24	1	3	1	7	1	1	1	1	1	3	3	1

2. 감사 대상기관 현황

계	시군(출장소)	외청.사업소	임협, 농조	의료원	비고
49 기관	12	16	19	2	

3. 위원회 현황

가. 관용심사위원회

- 설치근거 : 내무부장관 지시('93. 5. 29)
- 목적 및 기능
 -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잘못에 대하여 관용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 보호
- 구 성 : 7명
 - 위원장 : 부지사
 - 부위원장 : 기획관리실장
 - 위원 : 5명(내무, 보사환경, 농정, 지역경제, 건설교통국장)

나. 공직자윤리위원회

- 설치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9조,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
- 목적 및 기능
 -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확립에 목적을 두고,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 처리
- 구 성 : 9명(법조인 2, 학계 1, 학식·덕망 2, 도의원 2, 공무원 2)

4. 주요사무

계 별	업 무 명
감사 1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감사 계획수립 및 조정 ○ 각종 감사업무 지도 ○ 자체 정기감사 실시 ○ 정부합동 정기 및 부분감사 수감 ○ 산하자치단체장 사무인계인수 감사 ○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○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처리 ○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○ 감사관련 소청 업무 ○ 공직기강 사정업무 계획 및 추진
감사 2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 부분감사 실시 ○ 도본청 결산감사 및 보고 ○ 감사원 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○ 계산증명 검산 ○ 공무원 비위사항 기록 통계관리
감사 3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하자치단체 기술분야 감사 ○ 주요건설사업 사전 서면 감사 ○ 감사원 기술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
조 사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약분야 기동 감찰 ○ 징계의결 및 소청에 관한 사항 ○ 공직자 복무점검 ○ 비위관련 동향 및 첩보처리 ○ 특명사항 조사처리 ○ 각종 민원사항 조사 처리 ○ 재산 망실 및 훼손사고 조사처리

II. 행정 감사의 내실화

1. 정기 감사

가. 대상 기관 : 24개 기관

○ 종합 감사 : 19개 기관

· 시 군 : 3개 시군 (괴산군, 진천군, 옥천군)

· 사업소 : 9개 사업소 (도민교육원, 보건환경연구원, 산림환경
연구소, 도로관리사업소및충주지소, 가축위생시험소및
북부지소. 제천지소. 남부지소)

· 단 체 : 7개 기관

- 농지개량조합 : 5개 조합 (제천. 청원. 보은. 영동. 괴산농조)

- 임업협동조합 : 2개 조합 (제천. 음성임협)

○ 부분감사 : 5개군 (청원, 보은, 영동, 음성, 증평)

나. 감사 주기

○ 정기 감사 : 3년 주기 실시

○ 기획 감사 : 매년 대상업무 선정 실시

○ 기강 감사 : 년중 수시 실시

다. 감사 일정

- 종합 감사 : 시 14일간, 군 10일간, 사업소및단체 3~6일간
- 부분 감사 : 6일간
- 정기감사 기관별 실시 일정 : 별첨

라. 감사반 편성 — 감사대상기관에 따라 조정 편성

- 종합 감사 : 15 ~ 20명
- 부분감사 및 기획감사 : 5 ~ 10명
- 기강 감사 : 감사실 요원 전원

마. 감사 중점

- 정부 및 도 역점시책사업 추진 상황
- 10대 취약업무 (추후 지정 통보)
- 인허가 민원 사항
- 무사안일, 보신주의, 책임전기등의 소극적 업무 처리
-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지탄대상 공직자 적출을 위한 기동감찰

2. 기획 감사

가. 감사 대상 : 2개 분야 (농공단지조성, 보조금사업)

나. 감사 시기 : 2회 (4월, 10월)

다. 감사 중점

- 농공단지조성 분야
 - 단지조성계획 수립 적정 여부
 - 대상업체 선정 현황
 - 선수금 관리 실태
 - 단지 분양 실태

- 보조금 사업
 - 사업 선정의 적정성
 - 사업비 교부 및 정산
 - 사업 성과 분석

3. 공직기강 점검

가. 감사 대상 : 도. 시군 및 산하기관

나. 감사 시기 : 년중 수시

다. 감사 운영

- 시군 읍면의 민원실등 「부조리신고 엽서함」 비치 활용
- 부조리신고센터운영 (전화 55 - 3333)
- 「기동감찰반」 운영
- 일상감사제 및 직무고발제 확행

4.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

가. 감사담당공무원 사기 앙양

○ 감사담당공무원 인사 우대 확행

-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경력 평정 우대
('96. 4. 1 부터 적용, 1개월마다 0.04점 가산)
- 2년 이상 근무자 전보시 본인의 희망부서 우선 배치
- 감사실적 우수자에 대한 승진대상 10% 범위 이내 특진제 실시

○ 우수 감사담당공무원 표창 추천

- 행정감사 및 사정 평가시 선발
- 도지사 이상 표창 우선 추천
- 모범 공무원 국내외 시찰시 우선

나. 감사담당공무원의 정예화

○ 감사원 위탁 전문교육 실시

- 교육대상 : 도 및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25명 (도 5, 시군 20)
- 교육시기 : 2월 ~ 11월
- 교육과정 : 감사관리자, 감사실무, 공사감사, 회계실무

○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

- 개최대상 : 도 및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
- 개최시기 : 년 2회 (4월, 11월)
- 내 용 : 직무교육, 정신교육, 체력단련, 연구과제발표, 친교의 시간 등

○ 감사요원별 연구과제 발표

- 발표대상 : 감사실 직원 전체
- 발표과제 : 개인별 감사지정업무
- 발표시기 : 12월중
- 발표내용 : 개인별 담당업무에 대한 법규 연찬 활동 및 기법등

○ 감사담당공무원 적격자 배치

—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 근속자 중 —

-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
- 소속 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
-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징계 처분후 3년이 경과된 자
- 인사 및 근무 평정시 청렴도가 양호한 자
- 감사 책임자에 의한 적격자 선발

다. 감사활동 전파

○ 시군 감사실시 결과 통보

- 전파대상 : 시군
- 전파내용 : '96 행정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용
- 전파방법 : 인쇄물 제작 배포

○ 감사 사례집 발간

- 발간대상 : '95 ~ '96 (2년간) 시군, 사업소, 단체등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
- 발간부수 : 200 부
- 배 부 처 : 감사원, 내무부, 각 시도 감사실, 시군, 도의회, 각 실과 사업소

라.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

○ 관용심사제도 운용

-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과감하게 관용
- 피 감사기관의 장, 피 감사자의 청구에 의해 관용심사위원회 심의 결정
- 심의 결정된 관용처분사항은 피 감사기관에 통보

○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공적 참작 감경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징계의결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
 - 6급 이하 공무원, 연구사, 지도사, 기능직공무원은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
 - 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
 - 훈.포장, 모범공무원, 청백봉사자상을 받은 공적
- 감경 기준

징계의결요구양정	감 경 양 정
파 면	해 임
해 임	정 직
정 직	감 봉
감 봉	견 책
견 책	불문 (훈계, 경고)

5. '96 자체감사기능 강화 대책

가. 관련 근거

-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자체감사기능강화대책 ('95.12.9)
- 내무부장관의 추진 지시 ('95.12.18)

나. 그동안 자체 감사 기능 강화 추진실적

- 도 감사부서 위상 제고
 - 감사책임자 직급 상향 조정 : 국가 5급 → 국가 4급
 - 기구 격상 : 기획관리실장 직속 → 행정부지사 직속
 - 감사정보비 인상 : 4급은 5 → 8만원,
5급 이하는 3 → 6만원,
 - 감사실 전입 1년 초과시 매월마다 0.04점 가산으로 경력 우대

다. 향후 감사기능 발전계획

- 시군 감사 기능 보장 ——— 국무총리실 권장사항
 - 군 감사 책임자는 지방행정5급으로 상향 조정
 - 시군 감사부서를 부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격상
- 도 감사실 기능 ——— 발전계획으로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 요망사항
 - 현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실, 조사담당관실로 개편
 - 담당관은 지방 4급으로 임용
 - 소방, 의료분야 감사권 인수
 - 본청 실·국에대한 횡적감사 실시 (국무총리 지시사항)
 - 특수분야 감사요원 충원 (토목, 지적, 화공, 건축, 농업, 세무)
: 지사님 배려사항

Ⅲ. 공직자 재산등록

1. 근거 법령

- 공직자 윤리법 : '93.6.11 법률 제4566호 개정. 공포
('93. 8. 12일부터 시행)

2. 대상 인원 : 352 명 ('95. 12. 31 현재)

- 공개 대상자 : 43 명 (도지사¹, 부지사², 도의원⁴⁰)

- 비공개 대상자 : 309 명

- . 4급 이상 공무원 (115명)
- . 감사, 세무부서 공무원 (47명)
- . 소방직 공무원중 소방장 이상 (134명)
- . 지방공사의 임원(의료원장, 진료. 관리부장) (5명)
- . 타부서 진출자(감사⁶, 세무²) (8명)

3. 재산등록 기준

-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

- . 정기변동 신고 : 96. 1. 31. (신고기준일 : '95. 12. 31)
- . 수시 등록및변동신고 : 년 중